

**장애인 체육회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규정**

장애인체육회 대회 개최·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제정 2015. 01. 09.
개정 2015. 04. 30.
전면 개정 2015. 09. 22.
개정 2017. 07. 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각종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단체, 선수, 임원 등에 지원하는 대회 참가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과 본회의 산하 경기단체, 장애인단체 기타단체 등에게 지원하는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개최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종목, 유형별 경기단체, 기타단체, 선수, 임원 등이 본회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개최보조금과 각종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단체, 선수, 임원 등이 본회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대회참가 보조금에 적용한다.

제3조 (용도) 보조금은 각종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개최와 국내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국제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참가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인건비, 행정비, 개인장비(본회 및 세종시를 대표하는 전문체육 출전 장비 제외) 임차비 및 개인용품(본회 및 세종시를 대표하는 전문체육 선수단복, 경기복, 경기 출전 용품 제외) 구입비 등의 경상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2장 편성 및 배정

제4조 (예산확보) 본회는 전년도에 익년도의 대회참가 보조금 지원지침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5조 (연간 보조금액)

- ① 본회는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경기단체 및 기타 참가 단체(장애인단체), 선수 등의 지원 실적, 기여도, 재정규모, 정책우선순위,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별 연간 지원액을 매년 년초에 공모하여 사무처에서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 ② 본회의 산하 단체와 장애인단체, 기타단체, 선수, 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회에 수시로 대회개최 보조금 지급과 대회참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단체, 선수, 임원 등이 신청한 대회참가 보조금 중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사무처와 해당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 ④ 본회는 미 가맹단체 및 미 경기단체의 선수가 대회참가 시 본회의 내부 승인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승인)

- ① 본회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통보받은 단체와 임원, 선수는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보조결정금액의 10% 이상)을 입금한 통장을 포함한 본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은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 접수, 검토, 승인, 지원의 절차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 시기 및 보조금은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행

제7조 (지원구분)

- ①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참가 보조금의 지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경기단체 및 각종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로서 전국 6개 이상의 시도 및 경기단체 참가하는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2. 경기방식이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거나, 선수구성이 세종시 대표의 성격을 갖는 대회(전문체육, 생활체육)
 3. IPC가 공인하는 올림픽 및 세계대회, 기타 공인 국제대회 등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참가하는 대회
 4. 친선대회, 교류대회 등에 출전하는 단체 임원 선수에게는 대회참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5. 어울림대회는 본회와 중앙가맹단체 등 경기단체에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를 제외한 단체 임원 선수에게는 대회참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본회에서 직접사

업으로 참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6. 대회참가 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지급 보조금액의 10%이상 자부담(찬조금 수익금 포함)을 하여야 한다.(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세종시 또는 본회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대회, 본회가 인정하는 대회는 자부담을 제외한다.)
7.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회

② 대회개최 보조금의 지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본회에서 승인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장기(배)/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기(배)/가맹경기단체회장기(배)에 대회개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가. 보조금 지급 횟수는 각 대회별 년 1회로 한다.
 - 나. 대회참가 총인원(선수, 지도자 포함) 및 대회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해당위원회와 사무처 간 논의를 거쳐 산정한다.
 - 다. 대회개최 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지급 보조금액의 10%이상 자부담(찬조금 수익금 포함)을 하여야 한다.(단, 중앙 가맹경기단체 또는 중앙 유형별경기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국 규모대회는 지급 보조금액의 30%이상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달리할 수 있다)
2. (생활체육대회 어울림대회) 시 또는 본회에서 승인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장기(배)/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기(배)/가맹경기단체회장기(배)/가맹경기단체체육대회/유형별체육대회/장애단체별체육대회 개최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가. 보조금 지급 횟수는 각 대회별 년 1회로 한다.
 - 나. 대회참가 총인원(선수, 지도자 포함) 및 대회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해당위원회와 사무처 간 논의를 거쳐 산정한다.
 - 다. 대회개최 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지급 보조금액의 10%이상 자부담(찬조금 수익금 포함)을 하여야 한다.(단, 중앙 가맹경기단체 또는 중앙 유형별 경기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국 규모대회는 지급 보조금액의 30%이상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달리할 수 있다)
3. 본회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위원회와 논의하여 직접 사업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범위)

- ① 제7조의 국내대회 참가보조금의 사용범위로는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신청하되, <별표>에 해당하는 지원항목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단, 대회규모, 출전선수, 참가인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대회참가에 소요되는 절대경비는 협의 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임원 및 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파견 지원비를 1인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올림픽 경기대회 : 500,000원
2. 아시아 경기대회, 유형별 국제종합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 : 400,000원
3. 세계선수권대회 (1~3년주기), 단일종목 국제대회 : 200,000원
4. 본회가 인정하는 기타 국제대회 : 100,000원

③ 제7조의 대회개최 보조금의 사용범위는 사무처와 협의하고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회개최 보조금액은 생활체육, 어울림대회는 대회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회에서 인정하는 대회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2. 대회개최 보조금 신청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어울림대회를 포함하여 년 간 단체별 (주관, 주최 포함) 2종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전국규모 대회는 대회별 규모 참가 선수 임원의 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와 사무처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대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고 보조금액은 해당위원회와 사무처간 논의를 거쳐 제7조 ③의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9조 (항목 외 사용의 금지)

- ① 신청 지원 단체는 본회의 대회참가 보조금 지급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에 정한 범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잔여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다. 단, 사전에 본회와 협의후 승인받은 항목은 인정한다.
- ②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단체나 개인은 향후 2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10조 (신청서류)

- ① 대회 참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회개최 1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신청공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3. 선수단 대회참가계획서 1부.
 4. 보조금 산출내역서 1부.
 5. 보조금 통장사본 1부.(자부담이 입금 되어 있는).
 6. 대회참가 계획 공문 1부.
 7. 대회주최 기관 공문 및 대회요강 각 1부.

8. 기타 본회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
- ② 대회개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회개최 45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신청공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3. 대회개최 계획서 1부.
 4. 보조금 산출내역서 1부.
 5. 보조금 통장사본 1부(자부담 입금 되어 있는)
 6. 대회개최 요강 각 1부.
 7. 기타 본회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

제11조 (보조금 지원단체 등의 의무)

- ①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 임원, 선수 등은 보조금 사용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통장이체 할 수 있다.
- ② 지원 단체, 선수 등은 보조금의 매 사업종류 후 단위 사업별로 본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대회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제대회 참가 시는 별도의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다.
 1. 대회결과 보고서
 2. 대회정산 보고서 (항목별 세부정산서 및 영수증)
 3. 대회 개최 및 참가 증빙사진, 팸플릿 등
 4.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2조 (보고결과 처리) 본회는 제11조에 의한 보조금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변경, 취소 및 반환

제13조 (배정액 변경) 본회는 제5조에 의한 지원 단체, 선수 등에 대해 보조금 확정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배정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 ① 본회는 지원단체, 선수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규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이 허위의 신청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단체, 선수 등의 서류검토와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 신청)

- ① 지원단체, 선수 등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단체, 선수 등 서류검토와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반환명령) 본회는 지원 단체, 선수 등이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원단체 등에 지원하는 타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토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대회불참 및 대회 미 개최)

- ① 지원단체, 임원, 선수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비 지급결정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본회에 보고하고 대회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지원단체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비 지급결정 대회를 개최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본회에 보고하고 대회 미 개최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타 규정 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본회의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결정한다.

제5장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5.01.19.)
-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5.04.30.)
-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5.09.22.)
-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7.07.17.)

< 별표 1 >

국제 · 국내 대회참가 지원비 기준금액

(단위 : 원)

항	목	세 목	내 용
대회 참가 비	대회 운영 비	숙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기준 - 특별시 : 35,000원 - 광역시 : 30,000원 - 그 밖의 지역 : 2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차량 유류비 : 거리에 따른 유류 실비(1대 기준) <li style="padding-left: 20px;">※ (연비는 차량제조사 기준) - 탑승 2인과 휠체어 2대 인정 - 탑승 3인과 휠체어 1대 인정 - 탑승 4인 기준 • 대중교통 : 실비 지원(택시 제외) • 항공편 : 본회와 협의 후 지급여부 결정(국내대회)
		급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인 기준 = 1식 : 8,000원.(2017.7.17 개정)</u>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수송 차량 임차 (본회와 협의)

- 가. 국내대회 지원 항목은 숙박비, 교통비, 급량비, 임차료에 준하며, 1회당 참가 단체별 지원은 최고 1,500천원 이하, 지원횟수는 단체별 년 2회 이하 연간 총2,500천원으로 제한함.
- 나. 개인의 경우는 1회당 300천원 이하 년4회 이하 연간 총800천원으로 제한함. (2017.7.17 개정)
- 다. 국제대회는 제8조에서 정한 파견지원비로서 1인 연 2회 지급에 한함.
- 라. 대회참가비 및 개인장비는 참가선수 및 단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한다.
- 마. 본회 직할 선수 이외의 선수는 대회참가 지원비 총액의 10%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